

경자양안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오 인택 **

1. 머리말
2. 경자양안 연구 현황
3. 앞으로의 연구 과제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정부는 매 20년마다 양전하도록 법제화하였다.¹⁾ 하지만 임란 이후부터 광무 양전 이전까지 시행된 道別量田으로는 계묘양전(1603), 갑술양전(1634), 경자양전(1720)뿐이다. 그 이후는 읍 단위로 전면적인 改量 또는 陳田만의 査陳이 행해졌다. 도별양전의 양안으로서 현재 남겨진 것은 13개 군현의 경자양안뿐이다.

양안은 정부가 토지를 조사하여 등록한 전근대 사회의 토지대장이었다. 따라서 양안은 만든 사회의 토지 파악 방식(양전 방식), 토지 등록 방식(양안의 기재 방식), 토지소유 실태를 반영하게 된다. 이 가운데 먼저 주목받은 것은 조선후기 양안의 토지소유 실태였다. 양안이 만들어진 조선후기의 신분별 토지소유 분화 양태가 직접 파악되는 자료로 인식된 것이다. 이로써 상민과 천민의 대토지소유가 파악되어 농민층 분화와 신분제 변동으로 나타난 조선후기 사회변동의 역사상이 제시되었다.²⁾

이후 양안 연구가 심화되면서 기존 연구에서 소홀히 다룬 경자양안의 토지 등록 방식(양안의 기재 방식) 가운데, 起主의 등록 방식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졌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22-A00005).

**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1) 『經國大典』; 『大典通編』

2) 김용섭, 1970 『조선후기 농업사연구 I』, 일조각(1995 『증보판 조선후기 농업사연구 I』, 지식산업사).

다. 그 결과 기주 등록에서 양반 소유지의 광범위한 노비 代錄 현상이 확인되었다.³⁾ 이로써 경자유안의 분석에 앞서 자료 성격을 충분히 검토할 과정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경자유안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경자유전과 경자유안을 대상으로 하여 양전 논의(양전론의 배경과 목적), 토지 등록 방식(양안의 기재 양식), 토지소유의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다.

본고는 이상의 연구 동향을 감안하여 최근의 경자유안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남겨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현황은 양전 논의(양전론의 배경과 목적), 토지 등록 방식(양안의 기재 양식), 토지소유 실태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2. 경자유안 연구 현황

1) 양전 논의: 양전론의 배경과 목적

90년대 들어 숙종대 말기의 경자유전 실태가 상세하게 검토된 것은 전결세 징수제도의 변화 측면에서였다. 사회경제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전결세 징수제도가 경차관담합제로부터 결정된 수세 총액을 지방에 할당하는 比總制로 변화하는 과정과 숙종대 말엽의 경자유전의 논리적 연관을 찾는 것이다. 즉 숙종대의 비총제 실시 과정에서 경자유전이 실시되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전세제로서의 비총법 이해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경자유안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⁴⁾

비슷한 시기에 경자유안의 성격 파악을 위한 숙종대 양전 논의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논점의 핵심은 전세제와 소유권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전세제 측면에서 양반층의 양전 찬반 논의는 은누결을 유지하려는 입장과 파악하려는 입장의 충돌로 파악되었다. 남겨진 관찬 기록상으로 볼 때 경자유전은 극심한 반대 속에서 이루어졌다. 명료하게 드러난 양전 반대론자들로는 양반토호, 감사, 수령이었다. 양전연기론처럼 명료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대론에 속하는 중앙의 양반관료층도 적지 않았다. 양전을 추진한 쪽은 숙종과 일부의 중앙관료였다. 정부의 양전

3) 이영훈, 1984 「양안의 성격에 관한 재검토 : 경상도 예천군 경자유안의 사례분석」 『歷史學報』102, 역사학회.

4) 이철성, 1991 「肅宗末葉 庚子量田의 實態와 歷史的 性格 : 比總制로의 변화와 관련하여」 『史叢』39, 역사학연구회.

목적은 은누결을 파악하여 전정문란을 해결하는 동시에 응세결을 증대시키려는 것이었고, 은누결의 수해와 연관된 지주층은 양전을 반대하였으며, 전정문란의 피해자인 농민층은 양전을 찬성하였다. 소유권 측면의 양전 추진 배경은 공식적인 양전 논의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발전 속에서 빈발하던 토지소유권 분쟁은 토지소유권의식을 자극하여 양전과 양안의 토지소유권 사정 기능을 강화시키는 잠재적인 배경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⁵⁾

숙종대 정부의 양전 논의를 반대론과 추진론의 시각으로 정리하여 양전을 중심으로 한 정부와 양반지주층간의 대략적인 갈등을 파악했지만 그 구체적 성격은 천착하지 못하였다. 특히 양전 논의에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견지한 중앙관료들의 실체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으며, 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응세결 증대를 꾀했던 숙종대 재정구조도 검토되지 않았다. 또한 토지소유권 분쟁의 사례를 소개하였지만 그러한 분쟁이 구조적으로 확대되었음도 논증하지 못하였다. 이후 이러한 한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정치사적 입장에서 숙종대 양전논의가 엄밀하게 검토되었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양전을 강력하게 반대한 정치세력은 남인으로 드러났다. 남인이 양전을 기피한 원인은 官界 진출이 일찍부터 막히고 또 그들이 여러 차례의 당쟁에서 패퇴함으로써 일찍부터 양반토호지주로 정착해 가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반면 양전을 강행한 정치세력은 노론정권과 숙종으로 드러났다. 그 원인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아 이를 정권의 위기이자 국가의 위기로 인식한 결과였다고 해석되었다. 아울러 양전 시행 배경에는 지주들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집권노론이 화답한 일종의 타협점에서 경자유안이 시행되었다고 추론되었다. 지주제가 발달하면서 토지소유권 분쟁이 빈발하고, 양안이 소유권 사정의 근거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주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혹은 奴名을 빌어서라도 양안에 등재되어야 할 필요를 느낀 탓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집권노론은 방전법과 같은 철저한 양전보다는 느슨한 양전 방식을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조선시기의 전체 양전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한 틀 속에서 행해졌다. 첫째 16세기 중반까지 수조권 분급대상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정지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양전을 실시하였다. 둘째, 경자유안(1720)까지로서 지주층의 은누결(진전, 가경전)을 파악하려는 시기이며, 지주층의 反양전 저항을 받으며 방전법과 같은 양전제 개혁을 모색했던 시기였다. 셋째, 광무양전 직전 시기까지로서 앞 시기의 양전제 개혁에 실패하여 白徵과 過徵으로 나타난 전정문란을 그 문란의 주체였던 수령이 자신

5) 오인택, 1992 「숙종대 양전의 추이와 경자유안의 성격」 『부산사학』23, 부산사학회.

의 주도하의 ‘邑別查陳整第量田’으로 해결하려던 시기였다.⁶⁾

이 연구가 파악하는 경자양전의 특성은 지주층의 은누결(진전, 가경전)을 파악하려는 입장과 파악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장의 상호관계 속에 존재하며,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한 사건은 ‘정부의 양전 찬반 논의’와 ‘방전법 논의’였다. ‘정부의 양전 찬반 논의’에서 양전을 추진한 정치세력은 집권 노론과 숙종이며, 심각한 재정 위기 속에서 고조된 정권의 위기감과 국가의 위기감으로 인해서 양전이 강행되었고, 양전을 강력하게 반대한 정치세력은 당쟁에서 패퇴하고 향촌사회에서 토호지주화한 남인이라는 것이다. 노론과 남인은 양반지주라는 점에서 동일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지만, 정치적 입장에 따라 양전에 대한 태도가 엇갈린 것이겠다. 노론과 숙종의 양전론은 ‘방전법 논의’에서 그 성격이 보다 명료해졌다. 방전법은 당시의 양전 기술 수준에서도 철저한 은누결 파악이 가능했던 방식으로 인식되었지만 양반지주층의 반발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노론과 숙종의 양전 추진론은 양반지주층과의 타협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추론되었다. 양반지주층의 양전론은 정치적 입장의 층위에서는 찬반으로 나뉘지만 ‘토지파악 방식’의 층위에서는 동질성을 유지한 셈이다.

양전 논의의 검토가 심화되면서 경자양전의 시행론과 보류론(양전반대론), 경자양전 시행론의 양전목표와 양전방식에 대한 분석도 심도있게 이루어졌다. 경자양전 논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경자양전(1720)과 직결된 논의는 1715년(숙종 41) 12월부터 1719년 가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의 논의는 양전시행론과 양전보류론(양전반대론)으로 파악되며, 양전시행론 속에는 양전 목표와 함께 세부적인 양전방식 논의가 포함되었다. 양전청 설치 문제, 균전사 파견 문제, 양전사목 문제 등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양전시행론과 양전보류론에 함축된 경자양전의 역사적 의의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자양전은 토품의 膏瘠과 等數의 高下에서 크게 어긋났다. 경자양전의 평가를 기유양전, 갑술양전의 평가와 함께 종합해보면 경자양전의 현실적 목표는 궁극적으로 응세 결부수의 증대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노론집권층은 경자양전을 통하여 전정문란이나 부세불균을 해소하려는 목표를 보였지만, 그것은 명목적 목표에 불과하며 드러난 실제 목표는 은누결을 파악하여 응세 결부수를 확대하려는 점에 있다는 것이겠다.⁷⁾

경자양전 논의를 직접 심층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지만,

6) 이세영, 2001 「조선 숙종대의 양전의 정치학」 『조선후기 정치경제사』, 해안.

7) 염정섭, 2000 「숙종대 후반 양전론의 추이와 경자양전의 성격」 『역사와 현실』36, 한국역사연구회.

위에 소개한 분석 결과에 애초의 분석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핵심적인 문제는 경자양전 논의의 실질적인 대상였던 양전청 설치 문제, 균전사 파견 문제, 양전사목 등의 분석에서 노론집권층의 명목적 목표와 실제 목표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드러내지 못한 점이다. 아울러 짚고 가야할 문제는 경자양전 결과에서 “토품의膏瘠과等數의高下에서 크게 어긋났다”로 평가된 부분이다. 이러한 해석적 평가는 종합적인 데이터 분석의 결과로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경자양전 결과에 대한 당시 일부 양반층의 부정적 평가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자양전 시행 전의 논의 단계에서 이미 양전의 시행론과 보류론이 있었던 만큼 그 양전 결과의 평가에서도 시행론의 입장과 보류론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었다.

숙종대 양전 논의의 본질이 재정 문제에 있다는 점에서 숙종대 재정 문제는 경자양전의 배경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문제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숙종대 재정 추이의 연구 성과가 주목된다. 숙종대의 재정 위기 속에서 호조가 취한 여러 재정 대책의 일환으로서 경자양전의 시행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숙종대에는 수입 고정과 지출 증가 구조 속에서 항상적인 재정 고갈이 발생하였다. 이에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었다. 영정법 실시, 대동법 확대 시행, 균제 개편 등이었다. 이러한 대책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경자양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영정법 실시, 대동법 확대 시행은 부세의 전세화로서 토지파악이 절실하였던 것이다. 경자양전은 수세결을 늘였으므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하지만 이후 수세결이 감소하여서 지속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였다. 이에 환곡의 재정 보용이라는 새로운 수입구조가 형성되어 국가재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영정조대에는 완전히 부세로서 정착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적극적인 도별양전이 시행되지 않고 소극적인 읍별양전만 시행되었다.⁸⁾

결국 숙종대 재정정책 측면에서 검토된 경자양전은 만성적인 재정 구조 속에서 시행된 부세의 전세화 추세로 인한 토지파악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었다. 경자양전 이후 도별양전이 시행되지 않고 소극적인 읍별양전이 시행된 것도 정부의 재정 수입이 전세 증대에서 환곡의 재정 보용 방식으로 전환된 탓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경자양전의 배경으로 제시된 비층제 실시와 더불어 경자양전과 그 이후의 읍별양전이 갖는 구조적 배경을 동시에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8) 송찬섭, 2000 「숙종대 재정 추이와 경자양전」 『역사와 현실』36, 한국역사연구회.

2) 양안의 기재양식 : 토지의 등재 방식

경지양안의 기재양식에 나타난 토지의 등재 방식은 궁극적으로 전세제와 토지소유권 두 측면과 연관된 정보를 제공한다. 초기의 양안 연구는 두 측면의 정보가 상호 일치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진행되었지만,⁹⁾ 최근에는 두 측면의 정보를 구별해서 연구하는 쪽으로 전환되었다.¹⁰⁾

현존하는 경지양안의 기재양식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지양안을 작성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양안의 기재양식을 당시 사회의 맥락 속에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실무적인 양전 조직을 복원하여 살핀 연구가 주목된다. 양전조직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양안 작성의 최소 실무 단위는 면 단위였다. 이는 1차적으로 면단위별로 양안의 기재양식이 통일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면단위로 통일된 양안의 기재양식은 2차적으로 군현별, 3차적으로 군전사별로 정리된다. 이 과정에서 면단위별로 통일된 양안의 기재양식은 군현의 수령과 군전사에게 그대로 용인되거나 재통일되었다. 따라서 양안의 기재양식이 분석될 때는 해당 사항이 어느 수준에서 양식의 통일성을 갖는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현존하는 13개 경지양안의 ‘기주’ 기재양식이 유형화되었다. 경상도형(좌우도), 전라우도형, 전라좌도형이 그것이다. 경상도형(좌우도)과 전라우도형의 기주 표기는 ‘기주’, 전라좌도는 ‘기’였다.¹¹⁾

결국 기주 기재양식의 차이는 특정한 사회경제적 성격의 산물이 아니라 군전사별로 통일되는 과정에서 ‘기’와 ‘기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서 ‘기’는 ‘기주’의 생략적 표기에 불과한 것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경지양안의 기재양식에 타당할지라도 그 이전과 이후 양안의 ‘기주 표기’ 기재양식은 별도의 분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주 표기’ 분석에서 유의할 문제는 ‘기주 표기’ 방식이 당시 사회의 법제적 사항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의미체계 속의 사항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문제의 해법이 명시적 사료보다는 시계열적인 사료의 구조에서 파악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조선시기 양안에 부여된 토지소유권 관리기능은 민간의 사적인 토지문서와 연관되어 완결되었다. 조선후기 토지소유권의 관리는 공적인 양안과 사적인 토지문서의 이원적 체계 속에서 완성된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양안의 기재양식과

9) 대표적인 연구는 김용섭, 앞의 논문을 들 수 있다.

10)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영훈, 앞의 논문을 들 수 있다.

11) 오인택, 2000 「경지양전의 시행조직과 양안의 기재양식」 『역사와 현실』38,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문서 표기형식의 상호 연관성과 그 변천 실태의 검토가 주목된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갑술양안에 비하여 경자유안에서 토지소유권 관리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는 조선후기의 지주제 확대 과정이 私的토지소유의 발전을 추동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田訟이 확대되던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 추세는 토지문서에서 토지 위치와 면적 표기 방식의 변화로 반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권 의식의 사회적 발전에 상응하는 양전제의 법제적 변화는 없었다. 토지소유권 관리체계가 사적인 토지문서와 공적인 양안이 상호 연관되어 완결되는 구조 속에서 양안의 토지소유권 관리 기능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고, 양안의 소유권 관리 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전세 부담이 강화됨을 뜻하는 구조적 모순 탓도 있었기 때문이다.¹²⁾

토지소유권 관리체계의 시각보다 좀더 직접적으로 양안의 기능을 검토한 연구 성과도 나타났다. 이는 경자유안, 나아가서 조선시기 양안의 일반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안은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방전법이나 정전법을 통한 경계책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련된 量田=經界策으로서 ‘定經界 均賦稅’를 지향하였다. 양전사업은 당시 농업현실을 파악하여 양안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양안은 소유권 대장과 조세대장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소유권 대장 기능은 기주에 대한 기록 방식과 자호지번, 사표, 전형을 통해 확인되며, 이는 나중에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발전하였다. 양안은 자호지번을 매개로 매매 문기 등의 문서와 연결되었으며, 行審冊을 통하여 매년 양안 기재 사항의 변동이 파악됨으로서 양안과 각종 토지문서와의 연관도 재생산되었다. 양안의 조세장부 기능은 결부수와 長廣尺數를 통하여 유지되었다. 매년 변화하는 農形과 時起結, 流來陳雜項, 면세전은 양안의 등사본인 행심책을 통하여 조사되어 납세자 중심의 깃기책으로 정리되었다. 따라서 양안의 기능은 행심책을 통하여 토지대장으로서의 소유권 장부로 분화 발전하거나, 행심책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납세자별 깃기로 분화되어 조세대장으로 기능하는 두 가지였었다.¹³⁾

양안은 한번 작성되면 등재된 필지의 형태나 형질 등이 변하거나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바뀐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토지대장였다. 하지만 양안을 등사하여 매년 등재 내용의 변동 사항을 기록하는 행심책, 이에서 소유자(납세자)별로 필지를 정리한 깃기책이 상호 연관되므로 전세 행정이나 토지소유권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점이 파악된 것이다. 현재 사료가 뒷받침되지는 않지만, 특정 지역의

12) 오인택, 1996 「조선후기의 量案과 토지문서」 『부대사학』20, 부산대학교사학회.

13) 최윤오, 2000 「朝鮮後期の 量案과 行審冊」 『역사와 현실』36, 한국역사연구회.

필지를 매개로 한 양안-행심책-깃기의 연관체계가 직접 분석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 하겠다.

양안이 17-18세기 현실에서 소유권 대장으로서의 역할과 조세장부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동시에 수행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앞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양안과 행심, 깃기의 상호 관계를 보다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이 라고 할 수 있겠다. 구체적인 수세행정에서 양안은 행심과 깃기를 통하여 완결되었다. 양안의 등사본인 행심책으로서 매년 각 필지의 농형을 조사하여 납세자(時作 포함)를 확정하는 行審을 행하여, 납세자별 수세장부인 깃기가 만들어지도록 돕는 것이다. 양안의 소유권 대장 기능은 양안의 자호지번이 매매문기 등의 토지문서에 기재됨으로서 드러나기도 하고, 행심책(양안 등사본)으로서 양안 기재 내용이 매년 확인됨으로서 보완되었다. 양안의 조세장부 기능은 결부수와 장광척수로서 나타나며 행심책을 통한 시기결 및 유래진잡탈면세전의 조사로서 수행되었다. 양안의 기주와 납세자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은 토지대장과 조세대장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하였고, 이러한 기능은 행심책과 깃기로 분화됨으로서 완성되었다. 소유권 대장으로의 발전체계는 양안-행심책-토지대장이며, 조세대장으로의 발전체계는 양안-행심책-깃기이었다.¹⁴⁾

양안의 소유권 관리 기능과 조세행정 기능의 검토를 통해서 양안의 행정적 기능이 보다 명료하게 드러났다. 양안의 기재 항목에서 소유권대장 기능은 자호지번, 조세장부 기능은 결부수와 장광척수가 각각 담당한 것이다. 양안의 자호지번은 각종 토지문서, 양안의 결부수와 장광척수는 행심책을 통해서 기능하였으며, 양안이 갖는 자호지번 기능의 불완전성은 행심책에 의해서 보완된 것이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필지를 매개로 한 양안-행심책-깃기의 구체적인 분석은 여전히 필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 할 것이다.

경자양전의 기재양식 연구사에서 가장 주목된 연구 방식은 ‘토지소유자 지시 개념용어’의 검토일 것이다. 이미 ‘주 규정’ 검토에서 제기된 방식이지만 ‘토지소유자 지시 개념용어’의 검토는 지속적인 추수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경자양전 직후인 18세기 중후반에 시행된 查陳양전과 개량전의 산물인 전라도 고산현진전양안(1748, 1759)과 충청도 회인현양안(1791)을 자료로 삼아 경자양안 이후의 양안에 나타난 토지소유자 표기 방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주목된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경자양안의 토지소유자는 舊主와 今主, 혹은 起主로 기재되었는데, 앞의 두 양안에는 ‘舊와 時’로 기재되었다. 이는 19세기 말 광무양안에 나타난 ‘時

14) 최윤오, 2000 「조선후기 양안의 기능과 역할」 『한국사의 구조와 전개』, 해안.

主'의 선행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며, 경자양전 이후 국가와 민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토지소유권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산현 양안(1748, 1759)에서는 현실 토지소유자를 조사하여 '時'로 표기하고, 경자양안상의 '起主'를 '舊'로 표기하였다. '시'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풀이되었다. "당시 법전 규정 상으로는 '시'는 아직 본주가 나타나기 이전에, 혹은 본주로 확정되기 이전에 임시로 '잠정적인 소유자'로 규정한다는 것이었다. 1759년 고산현진전양안의 '시'는 조사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를 의미했지만, 양안에 정식으로 등록된 것은 아니었다." 한편 회인현양안(1791)에 등장한 '時'는 현실의 토지소유자였으며, 이는 곧 '時主'를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경자양안의 기주는 소유자 파악시에 陳起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진기와 상관없이 현실의 토지소유자를 지시하는 용어로서 '時主'가 탄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역사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었다. "18세기 말 충청도 회인현 양안은 경자양안 이후 토지소유권 의식의 성장을 반영하는 가운데, 현실의 소유자 명인 시주명을 등재시키면서 하나의 토지대장으로서 일단 완결되었으며, 소유자명 등재방식에서 하나의 전기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후 100년이 지난 대한제국시기 광무-지계사업에서는 현실의 토지소유자를 지칭하는 '時主'라는 용어로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던 것이다."¹⁵⁾

논문의 핵심 논지는 경자양전(1720)부터 광무양전(1898-1904)까지 토지소유권의식이 성장했으며, 그 근거는 토지소유자를 지시하는 용어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자양안의 '기주'에서 광무양안의 '시주'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검토된 '주 규정'¹⁶⁾의 '시주'를 재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조선후기 사회는 토지소유자를 지시하는 개념 용어로서 '토주', '지주' 등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미 왕토 관념과 연관된 의미로 선점되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탄생한 용어들이 '전주', '기주', '시주' 등의 용어였다. 원래의 의미가 확장되어 토지소유자를 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개념의 탄생과 유통 과정이 사회문화사 차원에서 적절하게 검토된다면 기존의 사회경제사 연구 결과를 심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점에서 '기주-시주' 가설은 연구사 측면에서 주목되지만 앞으로 다양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 왕현중, 2001 「18세기 후반 양전의 변화와 時主의 성격 : 충청도 회인현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41, 한국역사연구회.

16) 이영훈, 앞의 논문.

3) 토지소유 실태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양안은 기주 등재에서 대록·분록·합록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는 토지소유 실태 분석에 앞서 핵심 자료인 양안에 관한 종합적인 사료비판이 선행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 점에서 칠곡 석전 광주이씨가 전답안과 추수기를 중심으로 갑술경자양전의 실상 및 경자양전이 가지는 의미와 그 성격에 대하여 고찰한 연구는 경자양안의 사료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방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현전하는 갑술양안이 없다는 점에서 전답안과 추수기의 비교를 통하여 갑술양안과 경자양안을 비교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분석에 따르면 전품에서 갑술양안이 그대로 경자양안으로 계승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점은 갑술양안은 황폐화된 농업현실보다 전품이 높게, 경자양안은 크게 개선된 농업현실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확대 해석되었다. 전형에서는 대부분 필지에서 갑량과 경량이 서로 달랐다. 결부수에서 개별 필지는 갑량과 경량에서 서로 달랐지만 전체 필지 단위로 보면 비슷하였다. 경량의 소유주 기록은 정확히 기록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전답에서 합록·분록·대록이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기재 방식에도 소유주는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주목된 것은 전품등급에서 경량이 갑량을 계승하였다는 사실의 확인이다. 이는 ‘정부와 관료(=지주)’가 타협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즉 양전론에서 ‘정부와 관료(=지주)’가 대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전이 강행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관료=지주’에게 전품등급을 농업현실대로 하지 않고 갑량을 따르도록 조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⁷⁾

위 연구 내용 가운데 사료비판 차원에서 주목되는 성과는 세 가지이다. 갑술양안의 전품과 경자양안의 전품이 동일한 점, 갑술양안과 경자양안의 결부수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 경자양안에서 합록·분록·대록이 일정하게 확인된 점 등이다. 개별 지주의 전답안과 추수기는 양안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등사한 것이므로 간접적인 양안 분석이다. 하지만 내용의 신빙성은 높다 할 것이다. 전품과 결부수는 궁극적으로 결부수 문제이다. 결부수에서 갑술양안과 경자양안이 동일한 점은 위의 연구에 나타난 것 외에도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제공한다. 그 가운데 하나는 양전 과정에서 개별 필지의 결부수는 일반적으로 승계되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다. 결부수 변화는 토지소유자에게 매우 예민한 문제여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7) 김건태, 1999 「갑술·경자양전의 성격: 칠곡 석전 광주이씨가 전답안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31, 한국역사연구회.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자양안의 대록·분록·합록을 확인한 것도 사료비판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다만 그것의 해석도 양안이 반영하는 토지소유 실태의 신빙성 여부를 넘어서 그 자체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읽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양안의 자료적 성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이후 단순 통계를 통하여 경자양안의 토지소유 실태를 파악하려는 연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남해현과 용궁현의 경자양안을 대상으로 가경전과 진전 파악의 실태가 주목되었다. 남해현을 대상으로 경자양안의 加耕田이 분석되고,¹⁸⁾ 용궁현 경자양안을 통하여 가경전과 진전 파악 실태가 파악된 것이다.¹⁹⁾ 이 가운데 후자가 가경전과 진전을 상호 연관시켜 분석하였으므로 연구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현존하는 용궁현 7개면(전체 10개 면) 경자양안의 가경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민층 전답 비중이 높은 면에서는 가경전의 답 비중이 높고, 양반 거주 면에서는 가경전의 전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양반 거주 면에서는 보와 같은 수리관개 농법으로 인하여 17세기 후반 경에 이미 논으로 개간될 한광지가 없었던 결과로 파악되었다. 진전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진전은 답보다는 전에서 발생하였으며, 양반층의 소유전답 비중이 높은 면의 진전비율이 높았다. 결국 용궁현 경자양안에 나타나는 특성은 두 가지이다. 첫째, 면 단위로 볼 때 양반거주 지역에서는 가경전이 적은 반면 진전은 많았고 평민 거주지역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둘째, 양반층 전답에서는 가경전 비율이 낮은 반면 진전 비율은 높고 평민층 전답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경자양안을 작성하면서 평민층의 소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경작되지 않아도 가경전으로 등재하고 나아가 진전마저 가경전으로 등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반면 양반들의 소유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가경전을 양안에서 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기경전을 진전으로 등재하였다. 요컨대 용궁현 경자양안의 가경전과 진전 파악에서 전정문란의 사례를 파악한 것이라 하겠다.²⁰⁾

경자양안의 가경전과 진전의 분석에서 전정문란의 흔적을 찾는 시도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분석 결과가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는 방법론적 모색과 더불어 사례 분석의 축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8) 오인택, 1994 「조선후기 신전개간의 성격 : 숙종대 남해현 경자양안의 가경전을 중심으로」 『부대사학』 18, 부산대학교사학회.

19) 김건태, 2000 「경자양전 시기 가경전과 진전 파악 실태 : 경상도 용궁현 사례」 『역사와 현실』 36, 한국역사연구회.

20) 김건태, 앞의 논문(2000, 한국역사연구회).

경자양안의 자료적 한계 속에서 면 단위 지주경영을 중심으로 병작지주의 토지 소유가 갖는 부계지주적 성격을 검토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부계지주를 포착하기 위하여 경자양안 가운데 전주부 낭산면을 중심으로 주변 면을 분석하여 낭산면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살피는 방법이 채택되었다. 낭산면에 거주하는 지주가 면 내와 면외에 소유한 토지 실태를 파악하려는 것이겠다. 낭산면 기주 806명과 垾主 142명의 토지소유 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양안 분석에서 1개 면만을 대상으로 할 때 부농은 축소되어 나타나고, 빈농은 확대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드러난다고 하였다.²¹⁾

경자양안만으로는 토지소유 실태의 분석이 어려우며, 적절한 보조 사료를 찾아 분석하더라도 면 단위나 그 이하 단위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주목할 부분이라 하겠다.

17세기 중엽부터 종법질서가 정착되었다는 사회사적 통설의 농업사적 배경을 경자양안의 토지소유 실태로부터 찾는 연구도 등장하였다. 종법질서의 정착이란 부계중심의 가족제도와 상속제도가 향촌사회에 정착했음을 뜻한다. 남녀차별, 장지봉사, 동성불혼 등을 내용으로 하며 동성촌락과 門中이 양반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고찰 대상은 용궁현 경자양안을 통한 田主의 토지소유 현황, 祭位 田과 契田의 확대과정과 관리실태, 門中과 契의 재정운영 세 측면이었다. 용궁현 경자양안 분석에 따르면, 17세기 전반-18세기 전반 사이에 전주들의 토지소유 규모는 영세화하였다. 1결 이상의 전주도 축소되고 전주의 수효도 감소하였으며 그들의 전체 면적 또한 축소되었다. 이는 양반층의 토지소유 영세화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은 양반층의 족적 결속력을 공고히 하도록 만들었다. 즉 양반층의 토지소유 영세화 현상은 17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종법질서가 정착되고, 나아가 동성촌락과 문중이 발달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고 해석된 것이다. 제위전과 계전은 동성촌락과 문중을 유지하고 발달시키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양반층의 토지소유 영세화 현상 속에서 재산상속의 남녀차별 관행도 정착되고 제위전도 규모를 확대시키면서 親盡된 제위전 운영에서 증가보다 문중구성원 영향력이 커졌다.²²⁾

조선후기 종법질서의 정착 배경을 경자양안에 나타난 양반 토지소유의 영세화 실태로부터 찾는 연구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시도이다. 하지만 종법질서 정착과

21) 최운오, 2000 「조선후기 양안상의 토지소유와 그 성격: 전주부 낭산면 양안을 중심으로」 『실학사상연구』 17·18합집, 역사실학회.

22) 김건태, 2000 「17-18세기 전답소유규모의 영세화와 양반층의 대응」 『한국사학보』9, 고려사학회.

토지소유 영세화가 상호 인과관계에 있다는 가설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 정교화와 더불어 폭넓은 연관 사료의 수집 작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앞으로의 연구 과제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의 경자양안 연구는 초기의 단순한 토지소유 실태 분석에서 다양한 측면의 검토로 전환되었다. 이로서 나름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지만 남겨진 과제도 적지 않았다. 본 장의 과제는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가 남긴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일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양전 논의(양전론의 배경과 목적), 양안의 기재양식(토지의 등재방식), 토지소유 실태 순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먼저 양전 논의(양전론의 배경과 목적) 측면이다. 양전 논의의 검토를 통하여 드러난 양전론의 배경과 목적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경자양전을 추진한 1차적인 배경과 목적은 재정 구조와 연관된 것이었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 속에서 부세의 전세화가 추진되면서 재정에서 전세 비중이 커진데다가 전세의 비총제화가 진행된 것은 정부의 경자양전 필요성을 크게 증대시킨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정부의 입장은 은누결의 파악과 전세 불균의 시정이라는 집권 노론층의 명목적인 양전 목적과 은누결 파악이라는 실제 목적으로 나타났다. 은누결과 연관된 관료층과 지주층의 양전 반대 입장은 재야의 남인층이 대변하였다.

경자양전의 2차적인 배경은 토지소유권 관리 문제였다. 공적인 양전추진의 논의 기록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고, 경자양전 시행 과정과 그 결과인 경자양안 기재양식에 반영되었다는 측면에서 2차적인 배경이었다. 경자양안에서 강화된 토지소유권 관리 기능은 정부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 아니라 양전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수용된 사회적 요구의 산물이었다. 이 점에서 경자양안의 전세제 측면은 정치사회적 배경, 경자양안의 토지소유권 관리 기능 측면은 사회문화적 배경이라 하겠다.

양전의 찬반 논의에 관한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양반지주층이 정부의 양전에 반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양전을 추진한 1차적 목적은 재정난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양전은 은누결 색출을 지향하였으며, 양반지주층의 양전 반대론은 사실상 은누결 색출의 반대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에서 드러난 양반지주층과 은누결의 관계를 ‘은누결 구조’라고 한다면 은누결 구조의 실

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앞으로의 양전사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은누결 구조는 그에 대한 기록이 적지 않게 소개되어 있어 명료하게 드러난 문제로 보이지만, 엄밀히 보자면 소개된 것은 모두 간접적인 2차 사료에 머물러 그 실체는 여전히 모호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은누결 구조는 양전사 측면에서 양반관료제사회의 내면적 성격에 접근할 수 있는 주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다.

양전 논의의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두 번째 과제는 양안의 토지소유권 관리기능 측면이다. 양전의 결과물인 양안은 전세와 토지소유권의 두 측면으로 구성되는데 공식적인 양전 논의의 기록에는 전세 측면만이 언급되었다. 공적인 양전 논의 기록에서 토지소유권에 대한 언급이 배제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양안과 토지소유권의 상호관계에 대한 당시 사회의 인식 방식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조선사회의 私的 토지소유권은 공적인 양안과 사적인 토지 문서의 이원적인 관리체계에 의해서 보호되었다. 이러한 토지소유권 관리체계 속에서 양반지주층은 은누결 색출을 위한 양전에 반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비교된 조선 양전(양안)의 특징을 일정 부분 반영할 것이다.

둘째 양안의 기재양식(토지의 등재방식) 측면이다. 최근 다양한 측면에서 양안의 기재양식이 검토되었다. '기주' 기재방식의 도별 유형, 토지소유권의 이원적 관리체계에서 양안이 담당한 역할, 원장부로서의 양안과 행정 실무용인 행심책과 갖기의 상호 연관성을 통한 양안의 수세장부 기능과 소유권 관리 기능, '토지소유자 지시 개념용어'의 검토 차원에서 제시된 '기주-시주' 가설 등이 그것이다. 이들 연구는 각기 나름의 목적을 지향하겠지만 양안의 기재양식 연구는 궁극적으로 전세제 운영 방식과 토지소유권 관리 방식을 파악하려는 것이며, 그 방법은 시기에 따른 변화상과 각 시기의 종합적인 연관체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양안의 기재양식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서 많은 후속 연구를 기다려야 사회경제와 사회문화적 의미를 드러낼 것이다.

양안의 사료 비판 차원에서 출발한 양안 기재양식의 연구는 양안 연구를 2단계로 진입시켰다. 대표적인 논제는 '주 규정'이다. 이는 토지소유권의식으로서의 '토지소유주 규정' 방식을 뜻하며, 현재 '起主-時主' 가설이 제기된 상태이다. 앞으로 추수 검증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 규정' 변화가 당시 정부의 공식적이고 의도적인 제도 개혁 결과물이 아니라, 현재의 해석 차원에서 드러난 점이다. 이는 당시 정부가 '주 규정'을 심각한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일상 문제로 인식했음을 뜻한다. 따라서 ‘주 규정’ 문제는 사회문화사적 문제로 보고 접근할 수 있다. 즉 사회문화적인 구조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量名의 등록에 나타난 戶名이나 대록, 합록, 분록 등의 문제도 사회문화적 흔적으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토지소유 실태의 측면이다. 양안의 사료적 성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양안의 단순 통계가 지양되고 다양한 분석 방식이 등장하였다. 양안 분석은 추수기, 호적, 향안, 족보 등의 자료로서 보완되어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지만, 양안기재양식의 새로운 해석 여하에 따라서 새로운 분석 방법도 모색될 것이다.

주목된 연구 성과 가운데 후속 작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는 먼저 칠곡 석전 광주이씨의 전답안과 추수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갑술양안과 경자유안의 등재 내용을 비교한 연구를 들 수 있다. 현존하는 갑술양안이 없고 새롭게 발굴될 경자유안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되어야 할 대안적 연구방법일 것이다. 용궁현 경자유안의 가정전과 진전을 분석하여 진정문란의 흔적을 찾으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서 언급된 ‘은루결 구조’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전주부 낭산면 경자유안을 중심으로 주변 면을 분석하여 면 단위 병작지주의 부채지주적 성격을 탐색한 연구도 경자유안 분석의 새로운 시도로서 주목된다. 경자유안을 활용한 다양한 접근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4. 맺음말

이상으로서 최근의 경자유안(양전) 연구 성과를 양전 논의, 양안의 기재양식, 토지소유 실태(양안의 등재내용 분석)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요약하여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하여 보았다. 그러한 가운데 느껴진 경자유안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기술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현재 13개 군현의 조선후기 경자유안(1720)이 남아있다. 이들 양안은 전근대 양안으로서 남아있는 것 가운데 가장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조선후기 토지제도사 연구는 경자유안을 비껴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단순한 통계 분석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료적 성격은 더 이상의 연구를 어렵게 한다. 이러한 사정에서 그 동안 다양한 접근 방식이 경자유안(양전) 연구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다양한 접근 방식이 모색되어야 하며, 그러한 가운데 새로운 경자양안 연구 방향이 등장할 것이다.

연구자가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경자양안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은 우선 경자양안의 탄생, 유통, 소멸의 전체 과정을 복원하고, 이를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 각종 양안 관련 사료와 연계시켜 정리해두는 것이다. 양안과 양안 외의 각종 연관 기록을 수집 정리하여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돕고, 계묘·갑술·경자·광무 양안과 토지조사사업을 다양한 층위에서 비교하도록 기초적인 자료 정리를 해두는 작업이 그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금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경자양안의 체계적 복원과 연관 사료의 정리, 각종 양안의 체계적 비교 정리는 양안 연구에서 다양한 해석 세계를 열어갈 것이다. 양안만큼 해당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세계를 통일적이며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1차 사료는 드물기 때문이다.

주제어 : 경자양안, 토지소유, 기주, 기재양식, 토지소유권의식, 시주

접수일(2010. 8. 31), 심사시작일(2010. 9. 3), 게재확정일(2010. 9. 10)

<Abstract>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 of the Study on Gyongjayangan in the latter part of Joseon

Oh, In Taek *

The Joseon government surveyed by law the national land every 20 years. But From the Japanese invasion (1592–1598) until before the Land Survey (1898–1904) the central government had only surveyed it three times. Among them a land register surveyed in 1720 remains. It is called Gyongjayangan. It reflects the land surveying and registering method of the society then and the real state of land ownership. It was the real state of land ownership that was first noticed. It was recognized as the material which reflected the differentiating form of land ownership according status.

With the deepening of the research, the registering method of owners in Gyongjayangan, neglected in previous studies was deeply researched. As a result, the practices of registering servants instead were identified. This raised the need to review the materials of Gyongjayangan. In recent years comprehensive reviews of various aspects were made. The point of research is as follows.

Above all, the subject and purpose of promoting land survey were analyzed. The political forces that propelled it were Noron, and the opposition forces Namin. The purpose of propelling it was to increase the land tax and overcome the chronic financial crisis.

Next, the analysis of registering form is a important research. In particular, it is noteworthy that the term pointing to the owner in register book reflects the consciousness of land ownership of the society. This shows the possibility that the registering form will be likely to be interpreted as a cultural history.

The methods to research reality of land ownership have also changed, which is to analyze land registers with the help of various materials such as pedigrees and agricultural management documents. In the future the new analyzing methods will

* 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e explored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of registering form.

As mentioned above, the studies on Gyongjayangan deepened considerably in recent years and raised new challenges. New approaches are being explored beyond simple statistical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its meaning change from the dimension of socio-economic history to that of socio-cultural history.

Key Words : Gyongjayangan, land ownership, registering form, Consciousness of land ownership, land registers